

의안번호	2208237
의 퇴 인	서삼석 의원
회 답 일	2025. 3. 31.
추 계 번호	25B09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한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지출은 변동하지 않으며 재정부담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변동은 다음과 같음

- (국 비) 5년간 274억 2,500만원(연평균 55억원) 지출증가
- (지방비) 5년간 국비 지출증가 규모와 동일하게 지출감소

※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사전·사후영향조사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향후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변동: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산자원조성사업(안 제41조제8항 신설)	현행	지방비(100%)	6,856	6,856	6,856	6,856	6,856	34,280	6,856
	개정안	국비(80%)	5,485	5,485	5,485	5,485	5,485	27,425	5,485
		지방비(20%)	1,371	1,371	1,371	1,371	1,371	6,855	1,371

주: 1. 본 추계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한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감소하게 되어 총 재정지출 규모는 변화하지 않으며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제4항 (수산자원조성사업) 신설	행정관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1.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	재량규정
2	안 제41조제8항 (수산자원조성사업)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1조제4항 (수산자원조성사업)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전·사후영향조사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현재 해양수산부고시 ¹⁾ 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2	안 제41조제8항 (수산자원조성사업) 신설	○	•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 참고

1)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2호) 제2조(사전·사후영향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비 지원 규모에 대해 추계
 - 국비 지원율은 유사사례(바다숲 조성사업)를 참고하여 80%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비 및 지방비의 재정지출의 변동 규모를 추계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감소하게 되어 총 재정지출 규모는 변화하지 않음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사전·사후영향조사 현황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행정관청)는 바다숲,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²⁾ 수행중

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 사전·사후영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6.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 **(사업개요)** 감소하는 수산자원의 회복 및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사업의 추진
- **(사업내용)** 바다숲 조성, 수산자원증대(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TAC(총허용어획량제도, Total Allowable Catch) 운영 등³⁾
※ [참고자료 1]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사전·사후영향조사 실적 참고
- **(추진계획)** 2030년까지 바다숲 540km² 및 산란·서식장 80개소 조성
- **(사전·사후영향조사)** 현행법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⁴⁾
- **(관련 예산)** 최근 4년(2022~2025년)간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2]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 예산: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내용	2022	2023	2024	2025
수산자원 조성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바다숲 조성	바다숲 기반 조성, 바다식목일 행사 등	31,240	29,962	32,754	33,534
		수산자원 증대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20,362	20,362	21,362	21,362
수산자원 조성 (지자체)	수산종자 방류사업		수산종자 방류사업	53,554	38,837	지자체 예산으로 '25년 추산 가능	지 자체 예산으로 공단에서 추산불가
	인공어초 설치사업		인공어초 설치	27,005	24,575	27,967	
사전·사후 영향조사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바다숲 조성	바다숲 조성을 위한 사전·사후영향조사 실시	—	805	5,025	3,300

-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4)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 ② (생략)
- ③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이하 “사전·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내용	2022	2023	2024	2025
		수산자원 증대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을 위한 사전· 사후영향조사 실시	-	281	260	지자체에 서 추진 하는 것 으로 공 단 에 서 추산 불 가
	수산종자 방류사업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사후영향조사 실시	-	1,756	1,566	
	인공어초 설치사업		인공어초 및 대행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사후영향조 사 실시	-	1,826	1,153	

주: 사전·사후영향조사 예산은 공단에서 수행한 사업만 집계함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

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한 사전·사후영향조사비용 지원(안 제41조제8항 신설)

□ 본 추계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재정부담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변동 규모에 대해 산출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사전·사후영향조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감소하게 되어 총 재정지출 규모는 변화하지 않으며,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인구감소지역) 본 추계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한 인구감소지역⁵⁾ 89개소를 참고함

※ [참고자료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참고

○ (수산자원조성사업 수) 사전·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한 유형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 참고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과거 사업실적 및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여 산출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각 사업 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유형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수

(단위: 개)

유형	조성지/ 인구감소지역	비고
바다숲	18.25 / 5.75	• '22년 바다숲 조성사업지 17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5개 • '23년 바다숲 조성사업지 17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5개 • '24년 바다숲 조성사업지 18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4개 • '25년 바다숲 조성사업지 21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9개 - 4년 평균을 일괄 적용
수산자원증대	4 / 2	• '22년 수산자원증대 조성사업지 6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4개 • '23년 수산자원증대 조성사업지 4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2개 • '24년 수산자원증대 조성사업지 6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2개 • '25년 신규사업 없음 - 4년 평균을 일괄 적용
수산종자방류	136 / 69.5	• '20년 종자방류 사업 139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71개 • '21년 종자방류 사업 135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66개 • '22년 종자방류 사업 141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71개 • '23년 종자방류 사업 129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70개 - 4년 평균을 일괄 적용
인공어초	26.25 / 14.25	• '21년 인공어초 사업지 27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14개 • '22년 인공어초 사업지 29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15개 • '23년 인공어초 사업지 23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13개 • '24년 인공어초 사업지 26개, 그 중 인구감소지역 15개 - 4년 평균을 일괄 적용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

- (사전·사후영향조사 단가) 수산자원조성사업 유형 및 조사 유형에 따른 조사단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 참고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사전·사후영향조사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단가

(단위: 천원/개)

사업 유형	조사 유형	조사단가	상세내역
바다숲/ 수산자원증대/ 인공어초	사전영향조사	89,201	• 27,676(인건비) + 9,921(경비) + 30,444(제경비) + 11,624(기술료) + 1,427(공제료) + 8,109(부가 세)
	사후영향조사	89,201	
수산종자방류	사전영향조사	4,999	• 3,663(인건비) + 236(경비) + 233(관리비) + 413 (이윤) + 454(부가세)
	사후영향조사	37,371	

주: 조사단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2024년 설계용역을 통해 산출된 예산으로 수행방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

- (국비 지원율) 바다숲 조성사업을 참고하여 국비 지원율은 80%로 가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국비 지원율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한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지출은 변동하지 않으며 재정부담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변동은 다음과 같음
 - (국 비) 5년간 274억 2,500만원 지출증가
 - (지방비) 5년간 국비 지출증가 규모와 동일하게 지출감소
 - ※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사전·사후영향조사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향후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음

[표 5]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비용 국비 지원에 따른 재정변동: 2026~2030년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대상)

(단위: 개소, 백만원)

	사업 유형	유형별 조사비용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현행	바다숲	사업 수(A1)	6	6	6	6	6	—
		사전영향조사 단가(B1)	89	89	89	89	89	—
		사후영향조사 단가(C1)	89	89	89	89	89	—
		소계 (D1=A1×(B1+C1))	1,068	1,068	1,068	1,068	1,068	5,340
	수산자원 증대	사업 수(A2)	2	2	2	2	2	—
		사전영향조사 단가(B2)	89	89	89	89	89	—
		사후영향조사 단가(C2)	89	89	89	89	89	—
		소계 (D2=A2×(B2+C2))	356	356	356	356	356	1,780
	수산종자 방류	사업 수(A3)	70	70	70	70	70	—
		사전영향조사 단가(B3)	5	5	5	5	5	—
		사후영향조사 단가(C3)	37	37	37	37	37	—
		소계 (D3=A3×(B3+C3))	2,940	2,940	2,940	2,940	2,940	14,700
	인공어초	사업 수(A4)	14	14	14	14	14	—
		사전영향조사 단가(B4)	89	89	89	89	89	—
		사후영향조사 단가(C4)	89	89	89	89	89	—
		소계 (D4=A4×(B4+C4))	2,492	2,492	2,492	2,492	2,492	12,460
	합계(지방비 100%) (E=D1+D2+D3+D4)		6,856	6,856	6,856	6,856	6,856	34,280
개정안	국비(80%) (F=E×80%)		5,485	5,485	5,485	5,485	5,485	27,425
	지방비(20%) (G=E×20%)		1,371	1,371	1,371	1,371	1,371	6,855

주: 1. 본 추계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한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감소하게 되어 총 재정지출 규모는 변화하지 않으며 추가재정요소는 발생하지 않음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한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사전·사후영향조사 실적

□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도별·지역별·사업유형별 실적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산자원 조성사업	바다숲	[강원] 고성(3,000), 속초(1,000), 양양(2,000), 강릉(1,000) [경북] 영덕(1,000) [인천] 옹진(2,000) [충남] 보령(1,000) [전북] 부안(1,000) [경남] 거제(1,000), 남해 (1,000) [전남] 여수(1,000) [제주] 제주(5,000), 서귀 포(1,000)	[강원] 고성(1,000), 양양 (2,000), 강릉(1,000) [경북] 포항(1,000) [경기] 안산(1,100) [인천] 옹진(1,000) [전북] 부안(200) [경남] 남해(1,000), 통영 (2,000) [제주] 제주(3,000), 서귀 포(1,000)	[강원] 고성(1,000), 속초 (1,000) [경북] 포항(3,000) [인천] 옹진(1,300) [경남] 남해(1,000), 통영 (2,000) [전남] 여수(1,000), 완도 (1,000) [제주] 제주(1,000), 서귀 포(3,000)	[강원] 고성(910), 속초 (910) [경북] 울진(910), 포항 (1,820) [부산] 기장(910) [인천] 옹진(1,820) [경남] 남해(910) [제주] 제주(3,640), 서귀 포(3,640)	[강원] 삼척(910), 강릉 (1,820) [경북] 울진(910), 포항 (2,310) [울산] 동구(1,500), 북구 (1,500) [충남] 보령(910) [경남] 통영(910) [전남] 완도(1,000) [제주] 제주(3,640), 서귀 포(2,730)
	소 계	21,000	14,300	15,300	15,470	18,140
	수산자원증대	[강원] 강릉(1,000), 동해 (1,000), 삼척(2,000) [경북] 포항(3,000), 영덕 (3,000), 울진(3,000) [경기] 안산(1,000) [부산] 기장(600) [인천] 옹진(1,000) [충남] 서천(400), 태안 (3,000), 보령(1,000) [전북] 군산(1,600), 고창 (1,000) [전남] 해남(1,600), 신안 (1,000), 보성(1,000),	[강원] 강릉(1,000), 고성 (3,000), 삼척(1,000) [경북] 포항(3,000) [부산] 기장(600) [인천] 옹진(1,000) [경기] 안산(1,600) [충남] 서천(400), 당진 (600), 태안(1,000), [전남] 무안(800), 함평 (800), 여수(1,000), 신안 (1,000), 보성(1,000), [전북] 고창(1,000)	[강원] 강릉(1,000), 고성 (3,000), 삼척(1,000) [경북] 포항(3,000) [울산] 북구(400) [부산] 기장(600) [인천] 옹진(600) [경기] 안산(1,600) [충남] 서천(400), 당진 (600), 태안(1,000) [전남] 무안(800), 함평 (800), 여수(1,000), 신안 (1,000), 완도(1,000) [전북] 고창(1,000)	[강원] 강릉(1,800), 고성 (3,000), 삼척(1,000) [경북] 포항(2,000) [울산] 북구(1,000) [경기] 안산(600) [인천] 옹진(600) [충남] 서천(400), 당진 (600), 태안(1,000), 서산 (600) [전남] 무안(800), 함평 (800), 여수(1,000), 신안 (1,800) [경남] 거제(600), 창원	[강원] 강릉(800), 고성 (3,000), 삼척(1,000) [경북] 포항(800) [울산] 북구(1,000) [경기] 안산(600) [인천] 옹진(600) [충남] 당진(600), 태안 (1,000), 서산(600) [전남] 무안(800), 함평 (800), 여수(1,000), 신안 (1,800), 부안(800), 고흥 (1,000) [전북] 군산(800)

구분	내역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완도(1,000), [경남] 통영(1,600), 거제(600) [제주] 제주(1,000)	[경남] 거제(600), 창원(1,000) [제주] 제주(1,000)	[경남] 거제(600), 창원(1,000), [제주] 제주(2,000)	(1,000), 남해(762) [제주] 제주(1,000)	[경남] 거제(600), 창원(1,000), 남해(762) [제주] 제주(1,000), 서귀포(1,000)
	소 계	28,400	28,400	22,400	20,326	21,326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자체)	수산종자방류	[강원] 강릉(488), 고성(845), 동해(150), 삼척(352), 속초(250), 양구(139), 양양(271), 영월(83), 원주(132), 인제(380), 정선(58), 철원(35), 춘천(139), 태백(0), 평창(8), 홍천(136), 화천(101), 횡성(49), 내수면자원센터(153), 한해성수산자원센터(260) [경기] 가평(304), 고양(180), 김포(550), 시흥(300), 양주(103), 안산(635), 안성(20), 양평(160), 여주(125), 연천(155), 파주(220), 평택(400), 포천(106), 화성(1,130), 해양수산자원연구소(531) [경남] 경남(51), 거제(1465), 거창(75), 고성(498), 김해(113), 남해(1443), 밀양(45), 사천(514), 산청(150), 양산(68), 의령(20), 창원(303), 통영(1,217), 하	[강원] 강릉(333), 고성(1,206), 동해(235), 삼척(245), 속초(205), 양구(189), 양양(343), 영월(77), 원주(118), 인제(260), 정선(35), 철원(35), 춘천(120), 평창(50), 홍천(147), 화천(74), 횡성(25), 내수면자원센터(155), 한해성수산자원센터(136) [경기] 가평(180), 고양(183), 김포(630), 시흥(350), 양주(170), 안산(700), 안성(18), 양평(160), 여주(278), 연천(193), 오산(0), 파주(220), 평택(400), 포천(105), 화성(1,350), 해양수산자원연구소(668) [경남] 거제(952), 거창(75), 고성(250), 남해(399), 밀양(45), 사천(568), 산청(150), 양산(63), 의령(10), 창녕(10), 창원(69), 통영(1,276), 하동(338), 함양(83), 함천(122)	[강원] 강원(120), 강릉(285), 고성(380), 동해(255), 삼척(355), 속초(250), 양구(229), 양양(451), 영월(57), 원주(118), 인제(262), 정선(35), 철원(35), 춘천(120), 평창(50), 홍천(93), 화천(20), 횡성(25), 내수면자원센터(157), 한해성수산자원센터(203) [경기] 가평(180), 고양(180), 김포(690), 양주(170), 시흥(380), 안산(627), 양평(168), 여주(126), 연천(200), 파주(220), 평택(400), 포천(106), 화성(1,350), 해양수산자원연구소(981) [경남] 거제(956), 거창(62), 고성(475), 김해(113), 남해(1,009), 밀양(45), 사천(508), 산청(150), 양산(63), 의령(9), 창녕(20), 창원(285), 통영(1,255), 하동(329), 함양(73), 함천(91)	강원 강릉(468), 고성(831), 동해(271), 삼척(211), 속초(210), 양구(330), 양양(693), 영월(143), 원주(88), 인제(244), 정선(42), 철원(30), 춘천(180), 평창(50), 홍천(95), 화천(50), 횡성(25), 내수면자원센터(299), 수산자원센터(52) [경기] 가평(178), 고양(143), 김포(640), 남양주(60), 시흥(380), 안산(516), 양평(169), 여주(126), 연천(197), 파주(219), 평택(378), 화성(1200), 농업기술센터(99) [경남] 거제(868), 거창(60), 고성(387), 김해(99), 남해(688), 밀양(44), 사천(591), 산청(150), 양산(6), 의령(9), 창녕(40), 창원(336), 통영(829), 하동(363), 함양(61), 함천(63) [경북] 경주(340), 김천(5), 문경(42), 봉화(75), 상주(30), 안동(265), 영덕	※ 2024년 실적은 2025년 3월 이후 집계

구분	내역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동(381), 함양(78), 함천(103) [경북] 경주(397), 구미(30), 김천(10), 문경(59), 봉화(84), 상주(29), 안동(230), 영덕(440), 영양(62), 예천(20), 울릉(561), 울진(715), 의성(30), 청도(10), 청송(30), 포항(799), 수산자원연구원(351) [부산] 강서(180), 기장(353), 남구(62), 북구(20), 사상(20), 사하(170), 서구(60), 수영(40), 영도(50), 해운대(130), 수산자원연구소(149) [울산] 울산(200), 동구(120), 북구(290), 울주(38) [인천] 강화(375) 옹진(2,625), 중구(375) [전남] 강진(100), 고흥(300), 광양(48), 구례(3), 담양(19), 목포(100), 무안(200), 보성(150), 순천(200), 신안(188), 여수(300), 영광(160), 완도(188), 장흥(176), 진도(205), 함평(100), 해남	[경북] 경주(325), 구미(15), 김천(5), 문경(42), 봉화(15), 상주(13), 안동(220), 영덕(404), 영양(65), 예천(10), 울릉(419), 울진(689), 의성(15), 청도(5), 청송(16), 칠곡(4), 포항(732), 수산자원연구원(588) [부산] 강서(280), 기장(379), 남구(62), 북구(30), 사상(20), 사하(90), 서구(100), 수영(40), 영도(50), 해운대(90), 수산자원연구소(92) [울산] 울산(200), 동구(120), 울주(590), 강화(375) [인천] 옹진(3,250), 중구(375) [전남] 강진(100), 고흥(300), 구례(3), 담양(20), 목포(100), 무안(400), 순천(100), 신안(188), 여수(300), 영광(178), 완도(3,638), 장흥(175), 진도(240), 함평(100), 해남(489), 해양수산과학원(1,800) [전북] 고창(283), 군산(475), 남원(24), 부안(878), 완주(23), 임실(97),	[경북] 경주(236), 구미(15), 김천(5), 문경(42), 봉화(15), 상주(15), 안동(210), 영덕(388), 영양(45), 예천(10), 울릉(380), 울진(755), 의성(15), 청도(6), 청송(15), 칠곡(5), 포항(743), 수산자원연구원(4,371) [부산] 강서(380), 기장(412), 남구(66), 북구(30), 사상(20), 사하(110), 서구(100), 수영(40), 영도(50), 해운대(90), 수산자원연구소(133) [울산] 울산(200), 동구(120), 북구(290), 울주(293) [인천] 강화(460), 옹진(3,810), 중구(240) [전남] 강진(100), 고흥(300), 구례(3), 담양(19), 목포(100), 무안(200), 보성(150), 순천(100), 신안(838), 여수(300), 영광(160), 완도(218), 장흥(172), 진도(174), 함평(100), 해남(675), 해양수산과학원(1,680) [전북] 고창(928), 군산(597), 김제(252), 남원(21), 부안(1,477), 순창	(388), 예천(22), 울릉(380), 울진(170), 의성(20), 청도(6), 청송(18), 포항(629) [부산] 강서(380), 기장(274), 남구(63), 북구(30), 사상(20), 사하(100), 서구(100), 수영(40), 영도(50), 해운대(90) [울산] 울산(200), 동구(120), 북구(290), 울주(290) [인천] 강화(444), 옹진(3129), 중구(640) [전남] 강진(100), 고흥(300), 광양(78), 목포(100), 무안(200), 보성(150), 순천(292), 신안(465), 여수(816), 영광(160), 완도(238), 장흥(173), 진도(188), 함평(100), 해남(675), 해양수산과학원(621) [전북] 고창(1874), 군산(872), 김제(400), 남원(50), 무주(20), 부안(974), 순창(17), 완주(80), 임실(128), 장수(27), 정읍(165), 진안(200) [제주] 제주도(2594), 제주시(58) [충남] 논산(160), 당진	

구분	내역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653), 해양수산과학원(1,116) [전북] 고창(70), 군산(363), 김제(300), 부안(812), 순창(19), 완주(24), 임실(100), 장수(9), 정읍(100), 진안(360) [제주] 제주도(2,463), 제주시(20), 해양수산연구원(110) [충남] 논산(160), 당진(620), 보령(1463), 부여(100), 서산(343), 서천(284), 아산(275), 예산(83), 청양(91), 태안(1,652), 홍성(370) [충북] 괴산(122), 단양(90), 보은(81), 영동(30), 옥천(142), 음성(25), 제천(215), 진천(22), 청주(40), 충주(112), 내수면산업연구소(10)	장수(9), 수산기술연구소(116) [제주] 제주도(4,281), 서귀포(58), 제주시(40), 해양수산연구원(100) [충남] 논산(210), 당진(600), 보령(1,448), 부여(100), 서산(288), 서천(222), 아산(244), 예산(83), 청양(72), 태안(2,579), 홍성(270) [충북] 괴산(148), 단양(64), 보은(122), 영동(44), 옥천(151), 음성(25), 제천(235), 진천(32), 청주(55), 충주(140), 내수면산업연구소(17)	(15), 완주(22), 익산(10), 임실(84), 장수(9), 정읍(84), 진안(271), 수산기술연구소(129) [제주] 제주도(2,682), 제주시(40), 해양수산연구원(792) [충남] 논산(147), 당진(590), 보령(650), 부여(98), 서산(281), 서천(416), 아산(155), 예산(63), 청양(64), 태안(1,291), 홍성(271) [충북] 괴산(146), 단양(103), 보은(134), 영동(43), 옥천(235), 음성(20), 제천(214), 진천(32), 청주(58), 충주(160), 내수면산업연구소(19)	(593), 보령(703), 부여(100), 서산(270), 서천(230), 아산(196), 예산(148), 청양(57), 태안(1109), 홍성(271) [충북] 괴산(90), 단양(103), 보은(134), 영동(43), 옥천(197), 제천(253), 진천(32), 청주(58), 충주(114)	
	소계	39,872	45,392	46,728	38,837	
	인공어초	[강원] 강릉(232), 동해(426), 고성(316) [경기] 안산(907), 화성(278) [경남] 통영(711), 거제(1,395), 남해(1,330) [경북] 포항(1,675), 경주(265), 영덕(282),	[강원] 강릉(4,152), 고성(341), 삼척(327), 양양(351) [경기] 안산(672), 화성(125) [경남] 거제(723), 고성(232), 남해(1,253), 사천(228), 창원(233), 하동(236)	[강원] 강릉(360), 고성(364), 속초(228), 양양(654) [경기] 안산(280), 화성(129) [경남] 남해(1,825), 통영(824), 하동(248) [경북] 경주(774), 영덕(754), 울릉(632), 울진(521), 포항(1,044),	[강원] 강릉(597), 고성(328), 동해(286) [경기] 안산(200) [경남] 남해(2,232) [경북] 경주(546), 영덕(793), 울릉(561), 울진(1,103), 포항(815) [인천] 옹진(1,579)	[강원] 강릉(242), 고성(687), 삼척(4,487), 양양(358) [경기] 안산(200) [경남] 거제(612), 남해(1,860), 통영(342) [경북] 경주(915), 영덕(300), 울릉(322), 울진(1,015), 포항(1,523)

구분	내역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울진(785),울릉(563) [부산] 사하(1,100) [울산] 북구(483) [인천] 옹진(1,599) [전남] 여수(582),무안(1,069), 완도(1,119),진도(1,006), 신안(2,622) [전북] 부안(814) [제주] 제주(4,008),서귀포(4,443) [충남] 보령(569),서산(383), 홍성(441),당진(411), 서천(520),태안(438)	[경북]포항(372) [울산]울주(483) [인천]옹진(1,529) [전남]무안(448),산안(3570), 완도(720),진도(249) [전북]군산(1,801),부안(847) [제주]서귀포(4,033), 제주(4,060) [충남]당진(665),보령(847), 서천(510),태안(675)	[울산]동구(153),북구(179) [인천]옹진(1,581) [전남]무안(425),산안(2,092), 완도(793),진도(530) [전북]군산(2,218),부 안(328) [제주]서귀포(3,521), 제주(3,836) [충남]당진(383),보령(686), 서산(302),서천(537)	[전남]신안(449),여수(1,160), 완도(501),진도(231) [전북]군산(1,869),부 안(778) [제주]서귀포(5,405), 제주(2,331) [충남]당진(654),보령(885), 서천(584),태안(249)	[인천]옹진(1,524) [전남]신안(1,471),여 수(1,148),완도(149),진 도(631) [전북]군산(1,931),부 안(741) [제주]서귀포(1,791), 제주(2,648) [충남]당진(940),보령(870), 서천(770),태안(490)
	소계	32,594	29,682	26,940	24,136	27,967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전·사후영 양조사	바다숲 조성	-	-	-	[강원] 강릉(70), 삼척(35) [경북] 울진(70), 포항(70) [울산] 북구(35), 동구(35) [전북] 군산(70) [충남] 보령(70) [경남] 통영(35) [전남] 완도(35) [제주] 제주(175), 서귀포 (105) [강원] 고성(300), 속초(75), 양양(225), 강릉(75), 동해(75), 삼척(150) [경북] 영덕(375), 울진(75), 포항(300) [울산] 울주(75) [부산] 기장(75) [경기] 안산(150) [인천] 옹진(525) [전북] 군산(150) [충남] 태안(150) [경남] 고성(75), 남해(75), 통영(225) [전남] 고흥(75), 신안(75), 여수(225), 완도(75) [제주] 제주(975), 서귀포(450)	

구분	내역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소계	-	-	-	805	5,025
	수산자원증대	-	-	-	[강원] 고성(56), [부산] 기장(56), [충남] 홍성(10), 태안(5), [전북] 군산(65), [경남] 남해(10), [경기] 안산(57), 화성(22),	[강원] 고성(80), 강릉(80) [전남] 신안(100)
	소계	-	-	-	281	260
	수산종자 방류	-	-	-	[강원] 강원(207) [경남] 경남(263.5) [경북] 경북(191) [부산] 부산(90) [울산] 울산(100) [인천] 인천(169) [전남] 전남(115.6) [전북] 전북(187.5), 고창 (20) [충남] 충남(200) [충북] 충북(51.5)	[강원] 강원(146.9) [경남] 경남(263.8) [경북] 경북(191) [부산] 부산(90) [울산] 울산(100) [인천] 인천(200) [전남] 전남(115.6) [전북] 전북(187.5), 고창 (20) [충남] 충남(200) [충북] 충북(51.5)
	소계	-	-	-	1,595.1	1,566.3
	인공어초	-	-	-	[강원] 강원(207) [경기] 김포(12), 안산(8), 화성(18) [경남] 경남(264) [경북] 경북(191) [부산] 부산(90) [울산] 울산(100) [전남] 전남(231) [전북] 전북(188), 고창 (20), [인천] 인천(16+209) [충북] 충북(52),	[강원] 강원(100) [경기] 경기(50), [경남] 경남(100) [경북] 경북(233) [전남] 전남(300) [인천] 인천(60) [충남] 충남(120) [제주] 제주(190)

구분	내역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충남] 충남(200), 홍성(20)	
	소계	—	—	—	1,826	1,153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